

##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5월 4일

### 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대통령령)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(안 제4조)
  - 현행 : 별표(삭제) ⇒ 개정: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
  - 개정내용

현 행				개정안			
(단위 : 원)				(단위 : 원)			
구분	일비	식비	숙박비 (1박당)	구분	일비	식비	숙박비 (1박당)
제2호	20,000	20,000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은 50,000)	제2호	25,000	25,000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100,000 광역시 80,000 그 밖의 지역은 70,000)

#### 4. 의견제출

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
- 전 화 : 043)740-3035, FAX : (043)740-3039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##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운임 및 숙박비 지급)”을“(국내여비의 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운임과 숙박비는 별표”를 “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제8조의2제5항”을 “영 제8조의2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”를 “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9조 및 별표 6의2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17조제1항”을 “영 제1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제24조제5항”을 “영 제24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제27조”를 “영 제2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제29조제1항”을 “영 제2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”는 “「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6조 및 별표 1”로 본다

9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본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<u>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</u> 지급한다.</p> <p>제6조(관계법령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되,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<u>제8조의2제5항</u>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<u>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</u>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의장”으로 본다.</p> <p>3. <u>제17조제1항</u>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4. <u>제18조제1항</u>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”는 “「영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3조”로 본다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4조(국내여비의 지급) ----- -----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--.</p> <p>제6조(관계법령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영 제8조의2제5항----- -----.</p> <p>2.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9조 및 별표 6의2 ----- -----.</p> <p>3. 영 제17조제1항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”는 “「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6조 및 별표 1”로 본다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6.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
7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8. 제29조제1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9.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「일반임기제공무원」”은 “「일반임기제공무원」”으로, “「전문임기제공무원」”은 “「전문임기제공무원」”으로, “「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

6. 영 제24조제5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7. 영 제27조-----  
-----.

8. 영 제29조제1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9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「일반임기제공무원」”은 “「일반임기제공무원」”으로, “「전문임기제공무원」”은 “「전문임기제공무원」”으로, “「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

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, “전문 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본다.

기제공무원”으로 본다.